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목)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7. 임현주 의원 외 6명 발의

(의안번호 제235호)

나. 회부일자: 2023.11.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11. 21.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9469호, 2023. 6.13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비용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추가
(안 제4조 및 별표 1)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¹⁾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2023. 11. 7. ~ 2023. 11. 13.) :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선하)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시행 2023.12.14., 2023.6.13.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비용을 포함하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및 별표 1)
-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여전히 미비한 편이고, 최근 몇 년간 언론 등을 통하여 경비원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보도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었음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2023. 10. 24.>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경비 시설 등에 냉난방 설비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례상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바,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없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들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목)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1. 7. 임현주 의원 외 5명 발의(의안번호 제236호)

나. 회부일자: 2023.11.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11. 21.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현주 의원 대표발의)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회의록 공개 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인용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²⁾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³⁾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입법예고(2023. 11. 7. ~ 2023. 11. 13.):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선하)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조례로 기간을 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존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규정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에 따른 회의록 공개 기간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개정안)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 심의 종결 안건 : 심의 후 30일 경과 후 - 심의 보류 안건 : 심의 후 90일 경과 후 - 보류 안건 재상정시 : 심의 후 30일 경과 후	- 심의 종결 안건 : 심의 후 30일 경과 후 - 심의 보류 안건 : 심의 후 3개월 경과 후 - 보류 안건 재상정시 : 심의 후 30일 경과 후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자치구 권한위임사무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 없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구민의 알 권리를 높일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목)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11. 7. 성북구청장 (의안번호 제214호)

나. 회부일자: 2023. 11.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11. 27.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10.19.)호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2008.04.03.)호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위10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용지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다. 추진현황

- 2006.10.19: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 2008.04.03: 장위 재정비촉진계획 최초 결정(서울시고시 제2008-111호)
- 2009.07.27: 장위10구역 조합설립인가
- 2011.05.06: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서울시고시 제2011-117호)
- 2013.07.04: 장위10구역 사업시행인가(성북구고시 제2013-70호)
- 2017.07.27: 장위10구역 관리처분인가(성북구고시 제2017-99호)
- 2019.07.25: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서울시고시 제2019-240호)
- 2020.07.30: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고시(서울시 고시 제2020-325호)
- 2021.02.25: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고시(서울시 고시 제2021-102호)
- 2021.08.19: 장위10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서울시고시 제2021-180호)
- 2022.04.28: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제안서 제출(조합 → 성북구)
- 2022.05.19 ~ 06.24: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3.05.11 ~ 05.25: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공람(성북구 공고 제2023-725호)
- 2023.06.07: 성북구의회 의견 청취(결과 : 원안동의)
- 2023.08.08: 주민공청회
- 2023.08.29: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요청(성북구 → 서울시)
- 2023.09.1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보완 요청(서울시 → 성북구)

○ 2023.11.08. ~ 11.22.: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재공람
(성북구공고 제2023-000호)

○ 2023.11.08. ~ 11.22.: 관련부서(기관) (재)협의

라.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4,037.0	감) 2,675.0	91,362.0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17,823.0	증) 2,592.0	20,415.0	22.3	
	도로	9,916.0	증) 1,166.0	11,082.0	12.1	공원하부 주차장 중복결정
	공원	6,012.0	-	6,012.0	6.6	
	학교	480.0	증) 580.0	1,060.0	1.2	
	공공청사	1,415.0	-	1,415.0	1.5	
	공공공지	-	증) 846.0	846.0	0.9	
택지 (획지)	소계	76,214.0	감) 5,267.0	70,947.0	77.7	
	10-1	73,140.0	감) 2,838.0	70,302.0	77.0	공동주택
	10-2	2,429.0	감) 2,429.0	-	-	종교시설 제척
	10-3	645.0	-	645.0	0.7	종교시설

※ 구역경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종교시설용지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변경)

※ 학교부지 정형화에 따른 구역계 조정으로 구역 내 학교 편입 면적 변경

- 전체 편입면적 : 1,060㎡ (기부채납 면적 : 480㎡ / 대토부지 면적 : 580㎡)

마. 법령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⁴⁾

4)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선희)

가. 주요 사항 검토

○ 2021. 2. 25 고시된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구역내 종교 용지(사랑제일교회) 제척 및 장위초등학교 선형 조정에 따른 구역 경계 조정과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하려는 것으로서

○ 금번 구의회 의견 청취안은 2023. 6. 7 의견청취에 이어 재상정된 건임

〈구의회 의견청취 재상정 사유〉

-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제척하는 필지들에 대한 접도요건 검토의견 제시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
- 조치계획(안) 마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사항 발생

○ (서울시 검토의견에 대한) 주요 조치 계획

획지면적감소, 이면도로 4m(신설), 공공공지 신설(4개소), 최고층수 변경(32층이하 ⇒ 35층이하)

- 정비기반시설 변경
 - 도 로 : 10m(막다른 도로) → 6m(차량동선 개선), 4m(신설)
 - 공공공지 : 4개소(신설)
- 획지면적 변경
 - 공동주택용지 : 71,887㎡ → 70,302㎡(감:1,585㎡)
- 층수 변경
 - 최고층수 : 32층(97m) 이하 → 35층(105m) 이하

○ 주요 변경 내용

- ▶ 재정비촉진구역 면적 : 94,037.0m² → 91,362.0m²(감 2,675m²)
- ▶ 토지이용계획 변경
 - 도로) 9,916m² → 11,082m²(증 1,166m²) *6m 도로 및 4m 도로신설
 - 학교) 480m² → 1,060m²(증 580m²) *장위초 부지 선형조정
 - 공공공지) 0m² → 846m²(증 846m²)
 - 획지 10-1) 73,140m² → 70,302m²(감 2,838m²) *공동주택
 - 획지 10-2) 2,429m² → 0m²(감 2,429m²) *종교시설 제척
- ▶ 건축물 밀도 : 용적률 264.79%, 최고 32층(97m)이하→ 용적률 277.24%, 최고 35층(105m)이하
- ▶ 건축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전용면적	세대수		증·감
	기정	변경	
계	2,004(임대341)	2,004(임대341)	
40m ² 이하	186(139)	156(128)	△30(△11)
40~50m ²	172(137)	146(128)	△26 (△9)
50~60m ²	630(65)	705(65)	75
60~85m ²	958	862(20)	△96(20)
85m ² 초과	58	135	77

-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안건은 2023.6.7.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서울시의 보완요청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한 건으로, 2023.11.9.부터 11.23일까지 14일간 주민 재공람 절차를 완료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사료됨.
- 향후 구의회 의견 및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중 합리적인 문제 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촉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목)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11. 7. 성북구청장 (의안번호 제227호)

나. 회부일자: 2023. 11.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11. 27.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2006.10.19)호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2008.04.03.)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3(2018.05.24.)호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2019.07.25.)호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된 후, 2021.1.14.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소송으로 정비구역 환원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장위15 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수립
 -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2018.5.24.) 및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제척(2019.7.25.)된 장위15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판결(2021.1.14., 대법원) 됨에 따라 장위15구역을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하고 최초 결정 계획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다. 추진현황

- 2006.10.19.: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357호)
- 2008.04.03.: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
- 2010.04.22.: 장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장위15구역 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42호)
- 2010.07.09.: 장위1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18.05.24.: 장위15구역 정비구역 해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63호)
- 2018.07.19.: 장위15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2019.07.25.: 장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40호)
- 2021.01.14.: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소송(서울시 패소, 대법원)
 - 정비구역 환원
- 2022.03.28.: 장위15구역 조합설립인가
- 2023.03.03.: 장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접수 : 조합 → 성북구청
- 2023.03.08.: 장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관련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1차)
- 2023.06.26.: 장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관련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2차)

- 2023.08.03.: 장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관련부서 및 관계 기관 재협의
- 2023.11.07.: 장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설명회
- 2023.11.09.: 장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공고(14일간)

라.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189,450.0	감) 1,781.0	187,669.0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63,237.0	감) 10,793.0	52,444.0	27.9
	도 로	21,509.0	증) 1,127.0	22,636.0	12.0
	공 원	27,802.0	감) 15,249.0	12,553.0	6.7
	녹 지	4,324.0	감) 4,324.0	-	-
	학 교	7,652.0	감) 380.0	7,272.0	3.9
	공공공지	-	증) 990.0	990.0	0.5
	공공청사	-	증) 8,993.0	8,993.0	4.8
	문화시설	1,950.0	감) 1,950.0	-	-
택지 (획지)	소 계	118,460.0	증) 6,518.0	124,978.0	66.6
	공동주택	92,546.0	증) 32,432.0	124,978.0	66.6
	복합용지	25,914.0	감) 25,914.0	-	-
기 타	소 계	7,753.0	증) 2,494.0	10,247.0	5.5
	종교시설	7,753.0	감) 241.0	7,512.0	4.0
	유치원	-	증) 1,620.0	1,620.0	0.9
	기 타	-	증) 1,115.0	1,115.0	0.6

마. 법령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선하)

가. 주요 사항 검토

- 장위15구역은 2006.10.19. 서울시고시 제2006-357호로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고시 된 후 2018.05.24.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및 2019.07.25.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제척되었다가, 2021.01.14.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소송(서울시 패소, 대법원)으로 정비구역 환원된 지역임
- 본 건은 직권해제처분 무효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재지정)하고, 변화된 정비사업 여건을 반영하며, 토지이용 계획 및 기반시설분담계획 등의 변경을 통해 적정 기반시설 확보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재수립) 사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변경 내용

-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구역 신설
 - 재정비촉진지구 : 920,535.7㎡ → 1,108,204.7㎡(증 187,669㎡)
 - 재정비촉진구역(장위15구역) : (해제전 189,450㎡) → 187,669㎡(감 1,781㎡)
- ▶ 토지이용계획 변경
 - 도로, 공원, 녹지, 문화시설 → 도로, 공원, 공공용지, 공공시설 등
 - 정비기반시설 등 63,237㎡ → 52,444㎡(감 10,793㎡)
- ▶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등 관련규정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주택 추가확보
 - 2차 역세권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정비계획 밀도 변경(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 및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반영)
 - 기준용적률 : 190.0%이하 → 210.0%이하
 - 촉진계획용적률 : 236.0%이하 → 223.37%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300%이하)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4조제3항⁵⁾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제3항⁶⁾에 따라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구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의견청취안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2차)·검토 후 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고, 2023.11.07. 주민설명회와 2023.11.09부터 14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완료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사료됨.
- 향후 구의회 의견 및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중 합리적인 문제 제기 및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촉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붙임] 의견서 1부.

5)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의견서

- 안건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5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 심사일자 : 2023. 11. 27.(월)
- 심사위원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의견채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라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접하고 있는 장위15구역은 유치원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획지로 계획할 것을 검토 바람.

2023. 12. 14.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14.(목)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11. 7. 성북구청장 (의안번호 제215호)

나. 회부일자: 2023.11.1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0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023. 11. 22. 상정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8조)

- (현행) 2023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1조의27), 「지방재정법」 제9조⁸⁾
- 예산조치: 해당없음
- 협의사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기 타: 입법예고 대상(2023.9.27.~ 10.1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선휘)

-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
- 7)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 8)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쳐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건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본 조례 제1조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차장법 제 21조의2</u>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u>제21조의2</u> ----- ----- -----.